

보도	2024.12.23.(월) 조간	배포	2024.12.20.(금)		
담당부서	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1팀	책임자	국 장	김회영	(02-3145-5600)
		담당자	팀 장	강성곤	(02-3145-5605)
	조사1국 조사3팀	책임자	국 장	권영발	(02-3145-5550)
		담당자	팀 장	정진원	(02-3145-5579)
	공시심사실 공시심사1팀	책임자	실 장	김준호	(02-3145-8420)
		담당자	팀 장	김종환	(02-3145-8450)
	회계감리1국 디지털감리팀	책임자	국 장	유형주	(02-3145-7700)
		담당자	팀 장	강대민	(02-3145-7725)
	금융투자검사2국 검사2팀	책임자	국 장	이현덕	(02-3145-7690)
		담당자	팀 장	허승환	(02-3145-7631)

부정한 수단으로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 및 관련 제도개선 추진 경과

-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매출급감 사실을 숨기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기업 및 주관 증권사에 대한 수사결과 검찰 송치
- 동 사안 처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시 및 회계 제도개선 추진

1.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주요 거래처의 거래중단 등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부풀려진 공모가로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찰에 통보하였고[’24.2월 증선위 긴급조치(Fast-track)]
 - 이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(특사경)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여 해당 코스닥기업 및 주관증권사 관련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(’24.12.20.)
 - 금융감독원은 ’23.11월 당해 코스닥 상장사의 실적 발표로 주가가 급락한 것을 계기로 동 사건을 인지하여 신속한 조사·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IPO 주관증권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하여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엄중조치할 예정임

- 한편, 이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은 공시심사, 회계감리 등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IPO 주관업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였으며
- 향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IPO 주관업무의 적정성 및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, 공시 및 회계감리 등 상장 관련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

II. 특사경 수사결과 등

1. 매출급감 사실 등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을 이용해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혐의

- 2023년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A사 경영진들은 향후 일정 기업 가치 이상으로 상장하겠다는 기존 투자자들과의 약정을 이행하는 한편, 상장을 통한 투자수익 등을 목적으로 A사의 신규상장을 추진하였음
- 그러나, 2022년 말경부터 주요 거래처들의 발주 감소 및 중단으로 향후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에서 당초 약정한 시기 내에 목표한 기업가치 이상으로 상장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
- A사 경영진들은 상장예비심사 신청 직전인 2023.2월 발주 감소 및 중단 등 사실을 숨긴 채 사전 자금조달(프리IPO)를 통한 투자 유치를 하면서 보유주식의 일부를 매도하여 개인적 매매차익을 실현하는 한편
- 2023.3~6월 상장예비심사 및 자금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등에 따른 향후 매출

급감 영향을 반영하지 않고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였으며,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하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*

* 주관사인 B증권사는 상장예비심사시 기재한 예상 매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A사와 공모한 혐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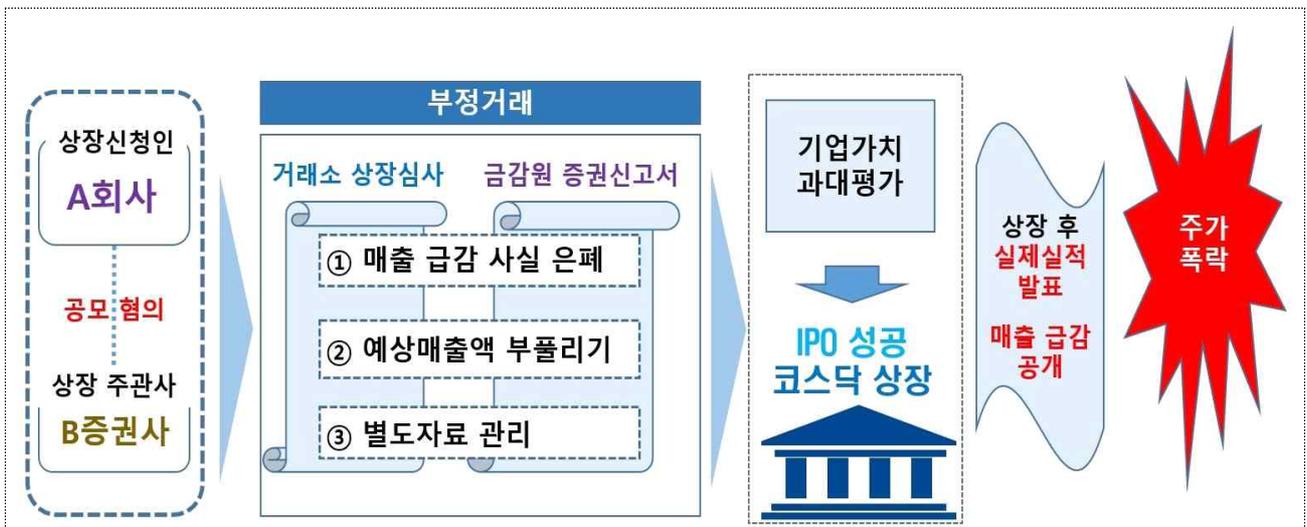
② 상장시 공모가로 신주를 취득한 투자자 및 상장 이후 동 주식을 시장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의 주가급락에 따른 피해 발생

□ A사는 상장한 후 분기보고서를 공시하였으며, 분기보고서상 실제 실적이 당초 A사가 상장 과정에서 제시했던 예상 실적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주가가 폭락하였으며*

* 실적 발표후 3일간 주가가 △45% 하락하였으며, 현재 시점까지 실적 발표전 주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

- 이에 따라 A사 주식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한편
-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나 상장절차를 진행중인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, 기업들이 제시하는 향후 예상 매출전망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야기함

<사건 개요>



Ⅲ. 신규 상장 관련 공시·회계 제도개선 내용

- 우리원은 IPO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주관증권사 책임강화, 증권신고서 공시서식 개정 등 공시제도를 개선하는 한편
 - 상장 전·후 회계심사를 강화하는 등 IPO 시장의 건전한 업무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

① IPO 관련 공시제도 등 개선

(1)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

- **(개선 내용)** 주관증권사의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실사의무 강화 및 공모가 산정 합리화 등을 추진하였음
 - 발행사 제시 자료에 대한 주관증권사의 실사 항목, 방법, 검증절차 등을 규정화(미준수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추진 중)
 - 공모가 산정시 과도한 추정치 사용, 부적절한 비교기업 선정 등을 방지하고 공모가 산정방식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, 주관증권사가 공모가 결정을 위한 내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였음

※ ('24.5.9 보도자료) 「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」 개최

- ▶ (공시서식 개정 '24.6.28.) 거래소 협약사항, 주관사 내부위원회 내용 등에 대한 공시
- ▶ (인수업무규정 개정 '24.6.28.) ①주관회사의 독립성 ②기업실사의 책임성 ③공모가 산정의 합리성, ④ 핵심투자정보 공시 의무화, ⑤ 내부통제 강화 등을 자율적으로 유도
- ▶ (금투업규정 개정(예정)) 부실실사 제재근거 마련,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 금지

- **(향후 계획)** 제도개선 방안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주관증권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합리적·구체적으로 마련하였는지 등을 점검 중이며
 - 중대한 미비점 발견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

(2) 재무추정치 등에 대한 공시 확대

- **(개선 내용)**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식을 개정해 공모가 산정을 위한 재무추정치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토록 하고, 신고서 제출 직전월까지의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명시적으로 기재토록 하였음*

* ('23.10.24 보도자료) 공모가 산정시 실적 추정 관련 공시서식 개정
('24.1.23 보도자료)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

- **(향후 계획)** 재무추정치 기재에 대한 공시 심사를 강화하고, 금번 사건에서 무리한 상장 추진 원인으로 지목된 주주간약정 등에 대해서도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

(3) 금감원-거래소간 정보공유 강화

- **(개선 내용)**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시 발견된 중요사항이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중요정보 상호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*, 거래소에 확약한 사항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토록 하였음

* ('23.7.27 보도자료) 우수 기술기업이 성장지원을 위한 기술특례 상장제도 개선 방안 마련

- **(향후 계획)** 기관간 실무협의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

② 상장 전후 회계심사 강화

- **(개선 내용)** 상장예정 기업 중 1조원 이상인 기업은 전수 심사, 사업 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

- **(향후 계획)**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심사·감리 확대 등 사전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

- 본건과 같이 신규상장 직후 주가나 영업실적이 급감*한 기업 등에 대한 사후 심사도 강화하는 한편, 이들 기업에 대한 회계법인의 엄격한 외부감사 수행을 독려·지원할 계획

* 예시) 상장 직후 영업실적이 급감(매출 50% 이상 감소 등)하고 주가가 공모가를 크게 하회하는 기업 등

IV. 시사점 및 당부말씀

-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나 상장절차를 진행중인 기업들은 공모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향후 매출추정 등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
- 상장 주관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는 상장대상 법인의 재무 상황과 미래 영업전망이 합리적 추정 하에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여야 함
-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및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 진행시 사실에 근거하고 합리적인 추정에 기반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해야 하며 관련 위험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에 유의할 필요
- 만약, 증권신고서 등 서류에 거짓기재가 있거나 허위표시 등이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
 - 상장 전 추정된 예상실적과 상장 이후 실제 실적과의 차이가 클 경우 주가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